의안번호	2208092
의 뢰 인	장철민의원
회 답 일	2025.4.9.
추계번호	25D0787

국회경호처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125명을 신규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96억 8,600만원(연평균 79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연계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 제22조의5 및 제37조 제1항에서 추계된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재정소요가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음

[표 1]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합계	7,557	7,742	7,932	8,127	8,328	39,686	7,9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지위)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둠	의무규정
2	안 제4조(직무)	경호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장, 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경호,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국회 및 의장공관의 경호, 국회의 회의(「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의 질서유지,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사무를 처리함	의무규정
3	안 제5조 (처장)	국회경호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1) 의안번호 제220809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2.12.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0조 (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 (지위)	○	-
2	안 제4조(직무)	○	-
3	안 제5조 (처장)	-	-
4	안 제10조 (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5	안 제12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휴대 및 사용할 무기의 종류, 규모, 가격 관련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국회경호처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설되는 국회경호처의 직급별 인력(정원)은 직제 등 국회규칙에서 정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사무공간 건축비의 경우도 현재 국회경비대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추후 제정안의 국회경호처의 규모가 확정된 후 그 규모에 따라 신·증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자산취득비는 현재 국회경비대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경호처가 사용할 적정한 무기의 종류 및 규모, 가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현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는 경호기획관(의회경호담당관) 소속 경위, 경호기획관(의회방호담당관) 소속 방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경찰)로 구분됨

[표 2] 현행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 조직 현황

구분	1선	2선	3선	계
신분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경찰)	-
소속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
관련근거	「국회법」 제144조	「국회사무처법」 제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업무	·회의장 질서유지 ·의전경호 업무	·청사 경비 및 방호 ·주차관리 업무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공관 경비	-
정원	67명	134명	118명	319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의 규정 및 현재 국회 안전·질서유지 업무 수행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125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기관부담금과 기

본경비를 추계

○ 제정안은 국회경호처장(차관급)을 두고, 현재 국회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경찰)가 수행하던 업무에 경호대상을 확대(경호대상에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경호를 포함)하도록 규정

○ 제정안에 따른 추가업무 등을 고려하여 국회경호처 전체 인력은 326명으로 가정

○ 현재 경호기획관 소속 경위 및 방호 인력 201명은 신설되는 국회경호처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국회경비대(경찰) 인력을 대체하는 118명에 국회경호처장 1명, 국회부의장 경호에 따른 추가인력 6명 등 125명을 신규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회의원의 경호에 소요되는 인력은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추계에서는 2025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직급별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하여 산정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등

❑ 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국회경호처의 신규증원인력 125명의 직급별 인원은 현 국회경비대(경찰)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배분함

[표 3] 국회경호처 신규증원 인력

(단위: 명)

	차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신규증원	1	1	1	12	11	25	74	125

주: 신규증원인력은 국회경비대(경찰) 대체 118명, 국회부의장 경호인력 6명, 국회경호처장 1명 등 125명

임
자료: 국회사무처 및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단가) 직급별 인건비 단가는 2025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2]하여 산정

[표 4] 직급별 인건비 단가: 2025년

(단위: 천원)

직급	차관	2급	3급	4급	5급
인건비	175,913	147,996	127,266	104,948	106,865
직급	6급	7급	8급	9급	-
인건비	74,790	57,703	46,812	40,927	-

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위 5급의 호봉이 높아 5급 인건비 단가가 4급보다 높음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인건비) 신규 증원인력 125명에 대한 인건비는 2025년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평균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5] 증원인력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266	6,416	6,570	6,728	6,889	32,8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3]을 적용하여 산정함

2) 처장 및 1~4급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5급은 1~4급 봉급 및 수당에 시간외수당을 추가하였고, 6~9급은 5급까지의 봉급 및 수당에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명절수당을 추가하였음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2024.11.)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	13.004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표 6] 증원인력에 대한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관부담금	815	838	863	888	915	4,3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경찰청 기동대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7.6%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7] 증원인력에 대한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476	488	499	511	524	2,4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125명을 신규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96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국회경호처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266	6,416	6,570	6,728	6,889	32,869
기관부담금	815	838	863	888	915	4,319
기본경비	476	488	499	511	524	2,498
합계	7,557	7,742	7,932	8,127	8,328	39,6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현재 국회경비대(경찰)의 규모와 국회부의장의 경호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국회경호처의 신규증원인력을 125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향후 국회경호처 인력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